

錦溪 黃俊良 先生과 豊基地域 退溪學脈

金 時 晃(慶北大)

• 目次 •

- | | |
|-------------------|---------------|
| 1. 머리말 | 4. 豊基地域의 退溪學者 |
| 2. 錦溪 黃先生의 生涯와 學問 | 5. 맷음말 |
| 3. 錦溪 先生의 文集 및 詩文 | |

1. 머리말

錦溪 黃俊良 선생은 朝鮮 明宗 宣祖 때의 학자로서 退溪先生의 門人이며, 學行이 뛰어나 士林의 尊敬을 받았으나, 그 큰 뜻과 學德을 오랫동안 널리 퍼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일찍이 逝去하였다. 退溪先生이 직접 棺上 銘旌을 썼으며, 異例的으로 行狀을 撰述하였고 丕 祭文까지 하였으니, 退溪先生이 얼마나 아끼고 重히 여겼던가를 斟酌할 수 있다.

현재 傳하는 선생의 文集은 内集 4卷, 外集 9卷 모두 13卷¹⁾인데 詩가 略 1000首 程度이고, 散文이 略 85篇이며, [韓國文集叢刊]에 있는 것 外에도 여러 가지 資料가 남아 있다. 文集에는 序文이 없고 跋文만 있는 것이 아쉽다.

선생에 대한 研究는 朴魯春 교수의 [錦溪先生文集] 解題²⁾, 尹天根 교수의 [黃俊良의 歷史意識]³⁾, 金周漢 교수의 [錦溪 黃俊良의 簡介]⁴⁾, 姜成塽 교수의 [錦溪 黃俊良의 文學과 思想]⁵⁾ 등이 있다.

1) [韓國文集叢刊] 37

2) [國學資料] 第36號 臨書閣 11980.7.

3) [退溪學] 第2輯 安東大學退溪研究所 1990.12.

4) [退溪學研究] 第12輯 慶尚北道 1992.

5) 安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2

筆者는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에서 '退溪學派의 地域的 展開'라는 主題로 特別企劃하고 있는 것에 따라, 선생을 中心으로 한 豊基地域의 退溪學脈을 대강 살펴보려는 것이다. 民族文化推進會〔韓國文集叢刊〕37에 있는 〔錦溪先生文集〕을 基本 資料로 하고, 既存 研究를 參考하여, 錦溪先生을 비롯한 豊基 地域의 학자들에 대한 生涯와 思想의 一面을 考察해 본다.

2. 錦溪 黃先生의 生涯와 學問

1) 生涯

錦溪 黃俊良 先生의 字는 仲舉, 號는 錦溪이고 本貫은 平海이며 高麗 때 侍中 벼슬을 지낸 黃裕中의 後孫이다. 侍中の 孫子 謂 瑾은 恭愍王 때 벼슬이 左獻納 이었는데, 正言 金續命과 함께 地震之變을 極論하는 上疏를 하여, 임금의 마음을 거스림으로써 玉川郡守로 나갔다가 後에 벼슬이 寶文閣 提學에 이르렀다.

提學의 子 謂 有定은 朝鮮朝에 工曹典書였고, 工曹典書의 子는 生員 謂 鋐인데 선생의 高祖이다. 典書公 때부터 榮川에 살았는데, 生員公이 또 豊基로 移居함으로써 豊基人이 되었다. 曾祖는 謂 末孫, 司醞 主簿이고, 祖는 謂 孝童, 考는 謂 鑑인데, 모두다 隱居하여 벼슬하지 않았으며, 姉는 昌原黃氏 教授 漢弼의 女이다.

선생은 中宗 11년(正德 丁丑 1517) 7월에 豊基에서 출생하였는데, 才質이 남다르게 뛰어나 일찍이 스스로 文字를 解讀하였으며, 말을 하면 곧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奇異한 神童이라 稱讚하였다.

中宗 29년 甲午(1534) 18歳 때에 南省試⁶⁾에 나아가 試驗을 보는데, 考試官이 先生의 策文을 보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고 稱讚함⁷⁾으로써 文名이 매우 藉藉하게

6) 南省試 : 高麗 德宗 때 國子監에서 進士를 뽑던 科舉, 國子監試.

7) 撃節 : 박자를 맞춤. 使臣으로 나감. 무릎을 치며 感歎하고 稱讚함. 〔三國志 13 魏王郎傳 註〕 '承旨之日 撃掌擊節'

되었으며, 늘 科舉試驗을 볼 때마다 언제나 우수한 성적으로 前列에 있었다.

中宗 32年 丁酉(1537) 21歲 生員試에, 24歲 己亥년에 廷試에 合格하였다.

中宗 35年 庚子(1540) 24歲 文科 乙科에 第二人으로 及第하여⁸⁾ 權知成均館學諭, 星州訓導에 任用되면서 宦路에 나서게 되었다.

壬寅年 26歲 入學諭, 癸卯年 27歲 陞學錄 兼養賢庫 奉事, 甲辰年 28歲 陞學正, 乙巳年 29歲 承文院 展考로서 尙州教授로 나갔다.

明宗 2年 丁未(1547) 31歲 가을 博士가 되어 朝廷으로 들어왔고, 그 해 겨울 例에 따라 典籍에 올랐으며, 이듬해 工曹佐郎으로 陞進되었으나, 外艱喪을 당하였다.

明宗 5년 庚戌(1550) 34歲 喪을 마치고, 典籍으로부터 戶曹佐郎 兼 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겼으며, 中宗과 仁宗 두 임금의 實錄을 編纂하는데 參與하였다가 겨울에 兵曹佐郎으로 轉任되어 佛教를排斥하는 上疏文을 올렸다.

明宗 6년 辛亥(1551) 35歲 慶尙道 監軍御史에 任命, 다시 承文院檢校에 指差되었으며, 6월에 곧 推牲御史⁹⁾에 임명되어 지방 民政을 살핀 다음, 7월에 禮曹佐郎으로 옮겼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9월에 司憲府 持平에 올랐다.

이 때 姓이 韓인 사람¹⁰⁾이 言路에 있었는데, 그 전에 선생에게 求한 것이 있었으나, 선생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中傷을 하여 遞職되었다. 결국 선생은 父母奉養을 위하여 外職을 자청하여 新寧縣監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丙辰年(40歲 1556) 병으로 벼슬을 버리고 故鄉으로 돌아왔다.

明宗 12년 丁巳(1557) 41歲 가을에 朝廷에서는 丹陽이 混弊¹¹⁾하므로, 특별히 그 임무를 맡을 사람을 選拔하였는데, 선생이 登用되어 丹陽郡守가 되었다.

8) 〔陶山及門諸賢錄〕에는 己亥年에 登第한 것으로 되어 있고, '從先生 得心經 近思錄 朱子書而讀之 深有感發'이라 하였다.

9) 抽牲御史 : 朝鮮時代에 정치의 잘잘못과百姓들의 框框 등을 살피기 위해 임금이 秘密히 派遣하던 御史. 抽牲이란 講經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씨를 뽑게 함. 씨는 경서에 있는 글귀를 하나씩 써서 통에 넣어 강생들에게 뽑게 하는 대쪽임. 〔增補文獻備考 卷186〕試官抽牲

10) 〔退溪先生文集〕頭註에 '姓韓人 按西厓集 有韓智源者 爲李芑等 鷹犬云 疑或此'라고 하였다. 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1 〔退溪先生文集〕九 4002면.

11) 混弊 : 쇠잔하고 괴폐함.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赴任하였다가 삼년 만에 임기가 滿了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禮曹와 兵曹正郎에 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¹²⁾

明宗15년 庚申(1560) 44歲 星州牧使에 임용되었다. 四年 뒤 癸亥年(1563)봄에 병으로 辭職하고 돌아왔는데, 도중에 병이 더하여 3월 11일 醫泉에 이르러 결국 졸하니 享年 47세였다. 이듬해인 甲子年 正月에 郡의 동쪽산 內谷 坎坐의 언덕에 葬事지냈다. 自身이 터를 잡고 창건한 豊基 郁陽書院과 新寧 白鶴書院¹³⁾에 祭享되었다.

夫人은 禮安人 察訪 李文樸 公의 女이며, 聲巖 李賢輔 선생의 孫女이다.

2) 學問의 振興과 教育活動

선생은 40餘 平生中 20餘年的 官職 生活을 하였는데, 오로지 學問의 振興과 教育 및 牧民官으로써 本分을 다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新寧縣監 在任時에는 더욱 학교 교육에留意하여 文廟를 새로 增築하여 힘써 학문을 勸獎하였으며, 옛 고을 터에 學舍를 창건하여 '白鶴書院'이라 扁額하고, 獻書와 治田을 하여 學問 研究 풍토를 조성하니, 선비들이 모두 真心으로 欽慕하였다.

丹陽郡守로 赴任하였을 때, 鄉校가 산속 개울가에 있어서 가끔 강물이 堤防을 넘어 들어오는 걱정¹⁴⁾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고을의 동쪽으로 移建하도록 하고, 좋은 材木으로 아름답게 세워 고을의 面貌를 一新하게¹⁵⁾ 하였으니, 재물이 없다고 하여 風化의 근원을 늦추지 않았음이 이와 같았다.

또 丹陽郡에는 前賢인 禹祭酒 卓 선생의 經學과 忠節이 있으므로, 다 世教의 師表가 될만하다고 하여, 文廟 서쪽에 별도로 집 한 간을 마련하여 제사지내게

12) 不拜 : 官職을 받지 않음.

13) [退溪先生文集] 頭註에 '白鶴書院 在縣西 三十里'라 하였다. 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1 [退溪先生文集] 九 4003면.

14) 侵齧 : 강물이 堤防을 차츰 차츰 먹어 들어감

15) 改觀 : 面貌을 一新함.

하였다.

星州는 세상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 이름난 곳인데도 선생은 牧使로 赴任한 후에 스스로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의 두 고을을 다스릴 때와 같이, 학문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일에 더욱 지극하게 힘을 기울였다.

이에 앞서 盧慶麟 牧使가 옛 碧珍의 터에 邀鳳書院을 建立하였는데, 선생이 이것을 增築하여 더욱 아름답게 하였으며, 또 文廟를 옛 규모로 넓혀 重修하였다. 마침 이 때 고을 教官으로 임용된 德溪 吳健 선생과 뜻과 議論이 合致하였으므로, 弟子들 若干員을 가려 뽑아, 학생들을 四等으로 나누어 맡아 가르치게 하고, 자신이 督勵하였다.

그래서 每月 一會 講을 하여 읽은 것을 背誦하게 하고, 따라서 뜻에 疑問이 있는 것은 論難도록 하며, 그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고찰하여 賞罰을 주었다. 고을의 동쪽에 孔谷이란 곳이 있는데, 諸生들이 書堂을 세우기를 원하므로, 선생은 매우 기뻐하여 孔谷書堂이라 扁額하여 書堂을 세웠다. 또 八萬縣에 鹿峯精舍를 새로 세워 多方으로 가르치고 일깨우니¹⁶⁾, 각각 資質의 高下에 따라 成就하는 이가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 豊基에 錦陽精舍를 세워 깊은 사람들을 공부하게 했다.

3) 先生의 學問

퇴계선생이 撰한 선생의 行狀을 보면 선생의 學問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비교적 昭詳히 言及하였다. 그 大略을 아래에 보인다.

처음에 商山 周世鵬 선생이 豊基郡守로 있었는데, 선생이 後進으로써 여러번 往復하면서 함께 학문을 論辨하였으므로, 그 다르고, 같고, 따르고, 안 따르든 간에 사람들은 이미 見識이 밝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堂에 나아가 학문의 맛을 알지¹⁷⁾ 못했으므로, 조정에 있

16) 訓迪 : 가르쳐 일깨움. [書 周官] '仰惟前代時若 訓迪厥官'

17) 噛識 : 맛볼제 자른고기자. 자른 고기를 맛봄. 맛을 아는 일. [韓愈 送高閑上人]

을 때는 오직 文辭로써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 뒤에 차츰 스승과 벗을 따르는 사이에 性理 淵源의 설을 들어, 처음으로 學問이라는 것이 종전¹⁸⁾에 말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어 이 학문에 뜻을 두고, 心經 近思錄 등의 여러 性理書를 읽었다. 최후에 또 朱子書를 얻어 읽고는 깊이 感發하여 크게 耽樂하였으며, 星州에서 또 同인의 도움을 받음¹⁹⁾으로 해서 그 뜻을 더욱 굳게 하고, 그 공부를 더욱 깊게 하였다.

늘 公務를 마친 여가에는 곤 德溪 吳先生과 서로 책상을 대하여 講讀하였으며, 밤을 낮을 삼아 寢食을 잊고 열심히 노력하여 지칠 줄을 몰랐으며²⁰⁾ 게으름이 없었다. 사람들이 가끔 지나친 勞力으로 병이 날까 봐 경계하라 하면 답하기를 '讀書를 하고 學問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을 기르는데 있는데, 어찌 독서 때문에 병이 생길 이치가 있겠는가. 가끔 이와 반대 현상이 있는 것은 運命이지 讀書의 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홀로 있을 때는 방안을 嚴肅하게 하였으며, 네 벽에는 聖賢들의 중요한 訓戒를 써 붙여 가지고 스스로를 警戒하고 反省하였다. 그리고 主靜 持敬의 말들을 깊이 취하였다.

그러나 늘 벼슬 길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뜻을 빼앗겼고, 官廳의 일에 얹매여 시끄럽고 어지러움²¹⁾을 깊은 병통으로 여겼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는 듯이 굴레를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晚年을 보내려고, 竹嶺 아래 錦溪 위에 그럴 곳을 마련하고, 몇 간의 집을 지어 錦陽精舍라 하였으며, 藏書하고 講道할 곳으로 삼았다.

대개 學問을 篤實히 좋아하는 뜻과 더욱 靜養하는 工夫로써는 당연히 進步함을 보아야 했을 것이고, 이에 그치지 말아야 하겠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序] '皆不造其堂 不嘗其藏者也'

18) 向來 : 이전부터 현재까지, 과거, 종전.

19) (周易 兌卦) '麗澤兌 爾子以 朋友講習'

20) 豐豐 : 열심히 노력하는 모양. [詩 大雅 文王] '豐豐文王 令聞不已'. 아름답고 훌륭한 모양.

21) 膠膠擾擾 : 시끄럽고 어지러움. [莊子天道] '膠膠擾擾乎 子天之合也'

질병으로 급히 세상을 떠나니²²⁾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나 선생의 이름은 이미 弘文 養才에 選拔되어, 戊午년 봄 선생이 丹陽郡守로 있을 때, 朝廷 臣下들이 의논하기를 임금에게 啓하여 불러들여 文翰職에 處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同進者의 離間으로 中止되고 말았지만, 한 때 諸公들의 賞識²³⁾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선생은 이미 能한 技藝²⁴⁾에 留意하여 榮華롭게 進出하는 名利를 취하는데 汲汲하지 않고, 돌아보아 생각을 바꾸어 온 세상 사람들이 求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들이 맛보지 않는 것을 맛보면서, 비웃음²⁵⁾이 비웃음 되는 것과 祾福이 祾福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날마다 부지런히 힘써 온 것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學問을 택함이 바르고, 道를 指向함이 부지런한 것이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崇尚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다.

4) 牧民官으로서의 愛民 政治

선생은 州縣을 맡아 다스릴 때는 職務가 卑冗함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文簿를 살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였다.²⁶⁾ 新寧縣監으로 있을 때 凶年이 들어 백성들이 깔주리게 되자, 마치 자기가 깔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여 적절하게 救恤함으로써 백성들이 되살아나게 하였다. 그리고 前政 때에 滯納한 租稅²⁷⁾는 선생이 節約 貯蓄함으로써 보충하여 두고, 그 백성들이 滯納한 文卷을 불살라 버렸다.²⁸⁾

22) 乘之는 乘鸞 乘龍 乘雲 등과 같이 神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닌가 함.

23) 賞識 : 사람의 才能이나 作品의 價值를 識別하여 重視하거나 讚揚함. [後漢書 68 許劭傳] '少峻名節 好人倫 多所賞識'

24) 文辭가 世上에 이름 난 것을 뜻함.

25) 非笑 : 비웃음, 謔笑. [傳習錄 卷中] '遂相與非笑 而詆斥之'

26) '旣屈跡于州縣 則又不以職務爲卑冗 抑首文簿 盡心民事' [錦溪先生行狀]

27) 逋負 : 빚을 갚지 않음, 조세를 체납함.

28) [錦溪先生行狀]

丹陽郡守로 赴任하여 四境을 돌아보니 겨우 數十戶가 남아 있으나, 모두 虛弱하고 병들²⁹⁾에 쓰러진 사람들 뿐인데, 그 原因을 알아보니 積弊 때문이었다. 그래서 선생은 慨然하며 말하기를 '官은 백성으로써 根本을 삼아야 하는데, 이 폐단을 除去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살 길이 없다. 무엇 하려고 관리가 되었는가' 하고는 十餘條目으로 上疏 極言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批答하면서 奬誘하기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매우 嘉尚히 여기며, 특히 십년을 한정하여 二十餘條目的 貢物을 덜어 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退溪先生은 '公의 精誠이 임금의 마음을 激動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옛날에 없었던 恩典을 베풀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³⁰⁾ 이로부터 丹陽의 백성들이 鼓舞되어 四方의 流浪民들이 모여들었다.

이 때 올린 上疏文은 매우 길지만, 〔朝鮮王朝實錄〕에 전하는 전체를 아래에 보여 후인들이 참고로 삼게 하고자 한다.

단양 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天下의 일은 疲弊되기 전에 補修할 경우에는 보통 사람도 對處하기가 쉽지만, 이미 피폐된 후에 진기시키는 경우에는 지혜로운 자도 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루어져 있는 형세를 기반으로 해서, 疲弊한 정치를 수습하는 것은 수령의 힘만으로도 쉽게 도모할 수 있다 하겠지만, 텡 비어버린 虛器만 가지고 이미 흩어져 버린 것을 수습하는 경우에는 수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반드시 懷綏하는 恩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폐된 것을 진기시키는 어려움은 피폐되기 전에 보수하는 쉬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조처에 대한 방략은 결코 수령이 전담하거나, 옹졸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신은 章句나 아는 보잘 것 없는 儒者로서 經世하는 재주가 없는데, 외람되어 군수의 책임을 맡았으니, 잔폐된 고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책임이 중합니다.

29) 逃 : 허약할왕, 절름발이왕.

30) 〔錦溪先生行狀〕

따라서 어찌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조금이나마 걱정을 나누어 갖는다는 중임에 부응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돌아보면, 이 곳과 가까운 곳에서 신이 살았기에 일찍부터 폐된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임함에 있어 그 참상을 목격하고, 시기에 맞추어 사무를 보자니 백성이 흘어진 지 오래되었고, 편안히 앉아서 모른 체하자니, 온갖 役事が 모여듭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의심이 되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성스러운 聖上께서 천리 밖을 환히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고루한 愚臣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한 가지인들 조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펴보니, 단양 고을은 본래 原州의 조그마한 고을 가운데 하나였는데, 적을 섬멸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의 칭호로 올려준 것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고 한쪽은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거진 잡초와 험한 바위 사이에 있는 마을의 집들은 모두 나무 겹질로 기와를 대신하고, 떠풀을 엮어 벽을 삼았으며, 전지는 본래 瘦薄해서 수재와 한재가 제일 먼저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흘어져 恒產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어도 반쯤은 콩을 먹어야 하는 실정이고, 흥년이 들면 도토리를 주워 모아야 延命할 수가 있습니다. [輿地勝覽]에 ‘땅이 척박하고 물이 차가워서 五穀이 풍요롭지 못하다.’고 한 것은 이곳의 풍토가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극도로 폐해져서 살아갈 길이 날로 옹색해지는 데다가, 부역에 나아갈 수 있는 민호가 40戶) 불과하고, 산과 들의 경지 면적이 3백 結에도 차지 않으며, 창고의 곡식 4천 석 중에는 피가 섞여 있는데, 그것도 逋負가 반이지만 받아 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부역의 재총은 큰 고을보다도 중하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다른 고을 백성보다 몇 꼽절이나 되어, 한 집이 1백 호의 부역을 부담하고, 한 장정이 1백 사람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 가난한 자는 이미 곤궁해지고, 곤궁한 자는 이미 병들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사방으로 흘어져 갔습니다.

아, 새도 남쪽 가지에 둑지를 틀고, 이리도 옛 언덕을 향하여 머리를 돌린다고 하는데,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전지와

마을을 버리고 돌아오려 하지 않으니, 유독 인정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겠습니까. 살을 에어 내고 골수를 우려내듯 참혹한 형벌을 가하여, 잠시도 편안히 살 수가 없으므로, 마침내 온 고을이 폐허가 되었으니, 성명聖明한 시대에 백성이 이렇게 심하게 학정에 시달릴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자는 阿大夫처럼 삶기는 형벌을 면하였으니, 악을 징계하는 법이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진 마음 그것만으로는 저절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비상한 방도가 있어야 다 끊어져 가는 형세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망령되어 千慮一得으로 주제넘게 세 가지 계책을 전달하겠으니, 삼가 전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조그마한 고을이 완전히 폐폐해져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같은 형편에 전일의 조공을 독책한다면 비록 공·소(蹠召)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부역을 면제해 주어 그 항목을 모두 없애고,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즐거이 살면서 일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태평스러운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仁義의 은택에 젖어들게 한다면, 원근에 유산되어 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기를 원할 것은 물론, 거칠어진 1백 리의 땅이 다시 살기 좋은 낙토로 변해서 근본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上策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멀리 10년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 매우 오활하다고 하는데, 이는 근본을 아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옛 사람들이 백성을 휴양시키고 生息시키는 데는 반드시 10년의 오랜 세월을 기한으로 하여 왔습니다. 越나라 句踐이 국력을 양성한 것과 諸葛亮이 국력을 규합한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신은, 10년만 부역을 면해 주면 1백 년을 보장할 수 있지만 3이나 5년에 그친다면 구제하자마자, 곧 도로 폐폐되어 원대한 계획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땅에 매겨져 있던 조공을 다 면제해 줄 수 없고, 調度가 많아서 10년 동안 늦출 수 없다면, 마땅히 郡과 郡守를 혁파해서 강등시켜 縣으로 만들어, 아직 흘어지지 않은 백성을 큰 고을에 들어가게 하여, 참혹한 해를 면하게 하는 것이 그 次策입니다. 폐폐된 고을이라 하여 까닭 없이 폐지하는 것 또한

큰 일이라 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도 행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下策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 가운데 큰 것만을 뽑은 것으로 폐단의 절반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니, 바로 눈앞의 고식적인 급함을 우선 구제하는 것이요, 피폐해진 것을 진기시켜 장구히 유지해 나가는 정사가 아닙니다. 그 항목이 열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材木에 대한 폐단입니다.

각 관사에 공납해야 될 크고 작은 재목이 檜材가 4백 개에 이르고 散木이 거의 수만 개가되니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숫자입니다. 40호에서 巨萬의 재목을 가지고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 운반하자면 남녀가 모두 기진 맥진하고, 소와 말도 따라서 죽게 되어 온 고을의 농가에 수십 마리의 가축도 없으니, 백성의 고생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강을 이용하여 뗏목으로 운반하므로 쉽게 공납할 수가 없는데, 三司의 貢價가 거의 1백 필에 이르므로, 2년 동안 공납하지 못하여 장구히 독촉을 받게 된 것은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중국 사신을 공궤하는 것도 비록 恒貢이 아니기는 하지만 彩棚을 만들 때 쓰는 큰 재목과 여기에 관계되는 잡물은 지공을 제거함에 있어 마땅히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기는 삼사의 공납을 오래도록 제해주고, 아울러 몇 해 동안 부역도 없애주며, 중국 사신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고, 겸하여 잡물의 폐단도 제거해 주면 백성들이 혹 여기에서 조금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종이의 공납에 대한 폐단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어려움은 다른 부역보다 배나 심한데, 종이를 공납하는 것이 유독 이 고을에만 많아서, 백성들이 시달리다가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입니다. 豊儲倉·長興庫의 경우는 모두 啓目에 의해 會稽에 관계된 물품이기 때문에 독책하지만 예조·교서관·관상감에도 모두 공납하게 되어 있어 도합 2백여 卷이나 되는데, 公私가 함께 바닥이 나서 판출할 길이 없으니, 고을이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나라에 바치는 공물 가운데 모자라는 것은 종이가 아닙니다. 수백 권의 종이를 아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기는 오래도록 그 공물을 견감하고 아울러 4년간 부세를 면제하여 주신다면 백성들이 여기에서 혹 조금쯤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山行에 대한 폐단입니다.

封進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이 있고, 사냥하는 사람도 각기 해당자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짐승의 사냥을 오로지 백성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과 활을 가지고 숲 속을 달리는데, 虜人이 없이 사슴을 쫓는 격이어서, 새 한마리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축해 놓은 곡식을 털어서 몇 꼽의 값으로 사들이는 데도 오히려 때에 늦은 죄를 면치 못하여, 다시 賢布의 벌을 받게 되니, 한 고을의 민생들이 오래 전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삼가 살펴보면 1년의 공물에 노루가 70이고 꿩이 2백이 넘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노루와 꿩의 숫자를 줄여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준다면, 남은 백성들이 혹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治匠에 대한 폐단입니다.

병오년에 처음으로 2명을 정했는데, 모두 乞人們로 그 額數를 채워 놓고 후일의 폐단을 생각지 않은 것이었으니, 액수는 그대로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아울러 민간에게 책임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의 입번에 대한 2명의 番價를 이미 몇 해 동안 결했으니, 이자가 불어나서 價布가 80필에 이르렀는데, 앉아서 侵索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을 저며내고 피를 말리는 참상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삼가 야장의 폐단을 아주 제거하고 아울러 2년 동안 결한 가포도 면제해 주신다면 남은 백성이 혹 여기에서 조금은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樂工에 대한 폐단입니다.

외방 고을에서 충원된 자가 아직 재능을 익힌 것도 아닌데, 6개월씩 부리므로 다른 역사보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잔폐한 고을에다가 4명을 충원하게 하였으니, 이미 지나친 것입니다. 지금은 노비(奴婢)들이 죽거나 옮겨가서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악공의 숫자를 지탱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생활해 갈 수가 없으므로 서로 연달아 도망하는데, 징수하는 가포는 야장과 같으므로 노비들의 생계가 더욱 위축됩니다. 삼가 우선 역사를 도피한 악공을 감면해주고, 길이 移定된 액수를 없애주신다면 남은 백성이 혹 여기에서 조금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步兵에 대한 폐단입니다.

본 고을에는 보병이 26명이니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겨우 13명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保率이 없는 단신입니다. 그 13명은 대체할 자가 없이 빈 문서만 걸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군대를 동원할 일이 있게 되면 누가 輶門의 陣中으로 달려갈 것이며 누가 竹嶺의 關防을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보병의 신역에는 으레 價布가 있으니, 현재 있는 13명은 모두 이웃

과 일족의 힘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1백 여의 가포는 어떻게 공납할 수가 없어, 민간에게 나누어 배정하였으므로, 한번 보병의 가포를 겪고 나면 온 고을이 탕진되어 솔이 남아 있는 집이 몇 안 됩니다.

삼가 헛 액수의 보병을 감하거나 혹은 移定하는 길을 열어 놓아, 머리를 떨구고 기운이 쭉인 백성들에게 법 밖의 가포를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면 또한 소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는 其人の 폐단입니다.

아전 50명 중에서 1명을 정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본 고을은 늙고 쇠약한 아전이 20명도 못 되는데, 기인의 액수는 1명 반이 됩니다. 10여 명의 아전이 80명의 역사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代布의 숫자는 1백 필이 넘으니, 잔약한 아전들로서는 尺布의 저축도 없는데, 장차 어디서 판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기울여도 부족해서 이웃과 일족에게까지 침학이 미치므로 背吏와 백성이 모두 곤궁에 시달립니다 2년 동안 貢役을 완전히 폐하였으므로, 앓아서 代立하는 침학을 받는데 刑部에 移文하여 늘 관리를 추문하고 있어 해가 자심합니다. 삼가 반으로 삭감해서 조금이나마 급박함을 펴게 해주면 또한 소생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는 皮物에 대한 폐단입니다.

兵營의 方物로 小鹿과 獐皮의 공납이 있는데, 이를 惟新縣과 아울러 배정하였고, 또 大鹿과 黃牛의 代價가 있는데, 上供한다는 명목을 평계로 그 선택을 최고로 하여, 소록은 사슴의 중간치로 하고, 장피는 사슴 가운데 작은 것으로 합니다.

다른 道에서도 모두 그러해서 이미 폐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10여 가지나 되는 雜色의 세금을 모두 백성에게 배정하였으므로, 點退와 留保에 대한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내야 할 正木이 1백여에 이르니, 이 또한 큰 폐단입니다.

그리고 유신현은 큰 고을이므로 반드시 弊邑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 牛鹿의 대가인 40필의 포를 유신현에만 배정하고, 폐읍에는 독책하지 않는 것이 또한 약한 자를 부지시키는 정치입니다. 삼가 바라옵기는 병영의 피물을 量減하고, 아울러 배정한 우록을 영원히 면제해 줌으로써 가죽이 다하면 텔도 없어진다는 폐단을 면하게 해주면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책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는 移定한 데 대한 폐단입니다.

본 고을의 조공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데, 다른 고을의 부세까지 더 이정했으니, 公州의 寺奴婢, 海美의 木炭, 연풍의 楠材, 永春의 蜂板, 黃潤의 其

人 등 다섯 종목이 그것입니다. 당초 移定한 것 또한 폐단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3백 고을에 이러한 폐단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노비의 액수가 빈 문서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현재 복역하는 숫자는 50도 되지 못하는데, 액수 외의 것이라 명명하여 이쪽에서 빼앗아 저쪽에 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이 3道의 요충에 해당되고, 고을에는 1백호의 聚落도 없는데, 사신들의 王래와 왜인들이 다니는 길목이므로 이들의 공궤에 드는 수요를 모두 이 무리에게 의지하는 것은 물론 卜物도 모두 이들에게 저나르게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또 수십 명이 도망하여 아직 돌아와 立役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 번이나 該曹에 보고하였으나, 관례에 따라 防啓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原憲의 채산을 빼앗아 季氏의 富를 보태 주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공주는 인민이 많은 큰 고을인데, 어찌 우리 고을에서 취해다가 채워야 될 형편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기는 공주로 이정한 노비를 도로 본 고을로 돌려 주고, 다른 고을에서 이정한 제반 공물도 도로 해당 고을로 돌려 준다면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정사가 될 것입니다.

열째는 藥材에 대한 폐단입니다.

약 이름도 모르는 무지한 시골 백성들에게 생판으로 판출하여 내게 하므로, 포목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니,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熊膽과 麝香, 白芨³¹⁾과 人蔘, 茯苓과 地黃입니다.

1백 필의 포목을 가지고도 이 약재 한 가지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는 모두 人情物까지 있으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정된 牛黃은 백성들이 내게 되니, 이는 전적으로 堤川에만 맡겨서 이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기는 한 고을을 버리지 마시고,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태평 성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면, 모든 병폐가 저절로 없어져 하늘과 땅에 화기가 감돌 것이니,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열 가지 폐단은 가장 해가 심한 것으로, 전체의 숫자로 계산하여 본다면 겨우 10분의 2쯤 됩니다. 흘어진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려면 마땅히 모든 역사를 감해 주어야 하는데, 이 10분의 2에 대해 하나라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다 개혁하지 못한다면 소생시키려는 계책은 어긋나고 말 것입니다. 취한다

31) 白芨 : 대왕풀, 外科藥으로, 바르거나 內服하는데, 收斂 止血의 효과가 있음.

고 꼭 나라에 이로운 것은 아니고, 덜어주면 백성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임금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열 가지 폐단에 대해 어렵게 여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清蜜의 공납이 2石이 넘는데, 백성은 적고 땅은 거칠어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젓갈용으로 쓸 訥魚의 배당도 1백 마리가 넘는데, 물이 맑아서 큰 것이 없으므로, 먼 지역에 가서 사 가지고 오니, 또한 폐단이라 하겠습니다. 諸員 1명이 이에 종사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역사와 독책의 괴로움이 治匠의 폐단과 다를 것이 없고, 歲貢을 위해 한 사람을 배정하여 그것으로 먹고살게 했으나, 역사를 도망하는 폐단이 樂工과 같습니다.

그 나머지 20개의 各司에도 모두 공물이 있고 朔膳·月令에 대해서도 각각 都會가 있는데, 크고 작은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낱낱이 거론하여 聖聰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채택해서 취사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아, 嶺東의 조그만한 고을이 기운이 이미 떨어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한 역사와 한 부세도 오히려 갖추기 어려운데, 里布와 地征까지 끝없이 독책하고,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으로 징색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역사를 도망한 자의 일족과 둑은 밭을 이웃에게 책임을 분담시켜 부세를 징수하여, 기필코 그 수를 채우려 하니, 10畝의 농사로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아무리 자애로운 부모라도 자식을 보호하기 어려운데,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폐기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제서야 알았으니, 그 사이의 시름과 고통으로 인한 원망에 대해 어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하여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신이 약 10년 동안 완전히 면제해 주어 길이 고통을 잊게 해주자는 것은 이 때문이며, 강등하여 部曲으로 만들어, 큰 고을의 그늘에 비호되도록 하자는 것도 이 때문이며,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면 진달한 바의 폐단만이라도 견감하여, 우선 일시적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기는 聖衷

으로 결단하고 대신에게도 상의해서 백성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고 또 監司와 兵使에게도 유지를 내려서 逋負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호하는 계책을 양쪽 다 극진하게 하면 더욱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다.

만약 지위도 낮고 말도 경망하여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 하여, 지난해처럼 관례대로 긴급하지 않은 공물이나 감면해 주고 만다면, 비록 감면해 주었다는 말은 있어도, 실상은 소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그런 실정을 통찰하였는 데도 본 고을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는 하늘이 버린 것이지 수령의 죄가 아닙니다. 아, 서민들이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임금이 함께 공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이와 같으면 한 나라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도 없이 떠도는 백성이 궁벽한 골짜에서 원망에 차서 울부짖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뭇 사람들의 원망이 골수에 사무쳤는 데도 위로 통할 수가 없으니, 하늘의 감시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형세가 모두 흙더미와 같아서 허물어지려 하는데, 개미 구멍을 막지 않았다가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화란을 미리 방비하지 않은 것이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아, 떠풀로 지붕을 덮고 궁궐을 낮게 했던 옛날에 어찌 재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을 것이며, 土器에 명아주국을 끓여 먹던 때에 어찌 짐승을 사냥하는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后夔가 典樂이 되자 神人이 화락하였으니 악공에게 무슨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공수가 공쟁이들을 보살펴 기술을 맡아 간하던 때는 야장들이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나무에 글을 쓰고 정사가 간소하였으니, 종이 만드는 폐단이 없었을 것이고, 文教를 펴서 악한 이를 감화시켰으니, 어찌 兵革의 일이 많았겠습니까.

百草를 맛본 것은 岐伯에서 비롯되어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니, 그때는 캐어서 바치는 괴로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九州의 큰 나라로서도 梁州에만 織皮를 바치게 했으니, 공물의 제도가 이미 간소한데, 어찌 가죽을 사서 바치는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때맞추어 山林의 나무를 베어 재목을 쓰고도 남았으니, 어찌 아전

들이 炭木을 걱정할 필요가 있었겠으며, 해가 뜨면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며, 이사를 해도 그 고장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어찌 백성들이 유리될까 걱정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태평 성대의 정치는 백성을 부려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해주면서도 누가 해준 것인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世道가 변하여 한번 격하되자 민생의 피해가 더욱 심해져, 色目이 수도 없이 많아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정령은 범과 같이 사나와서 견뎌 낼 수가 없습니다. 中澤의 기러기가 슬퍼 울고, 大東의 저축이 비어 있고, 곡퇴의 賦와 장초의 탄식이 이미 마을에 가득찼으며, 天災와 물피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어 백성이 유리됨으로써,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임금된 사람이 그 폐단이 발생한 근원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앉아서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대로 하여 풍속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聖君과 良相이라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요순 시대를 만났지만 눈은 말세의 정치를 보게 되니, 이것이, 신이 하늘을 우러르며 가슴 아프게 탄식하고, 통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삼가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한 지방을 보아 諸路를 미루어 살피시고, 한 사물을 들어 만 가지를 통찰하소서. 임금 노릇하기가 쉽지 않고, 백성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서 어진 정사를 베풀어 백성의 고통을 보살피고, 부세를 박하게 하여 민생을 후하게 해주시고, 사치를 고쳐 백성의 재물을 아끼고, 工事를 감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무거운 부세를 감면해 주고, 포흡낸 백성을 독책하지 말고, 正道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자를 통쾌히 소탕하라는 전지를 내리시고, 이로움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제거하는 계책을 극진히 강구하여 국가의 운명을 편안하게 해서, 瓦解되는 걱정이 없게 하시고, 나라의 근본을 공고하게 해서, 반석같이 튼튼하게 한다면 어찌 한 고을과 한 나라의 경사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만세토록 이어갈 宗社의 무궁한 복인 것입니다.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천한 몸으로, 아둔한 소견을 두서없이 함부로 전달하였으니, 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

는 정성은 소원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니, 한 고을의 폐단을 진달함에 三隅를 아시기 바랍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참람됨을 용서하여 주소서. 신은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상소를 받들어 올립니다.”

【사신은 논한다. 황준량의 상·중·하의 계책과 10개 조항의 폐단은 곡진하고 절실하다고 할 만하다.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과 수령들의 각박한 정상을 상소 한 장에 극진히 진달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어진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목이 메이게 될 것이다. 한 고을의 폐단을 가지고 3백 60고을을 미루어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없을 것이니, 아, 민생의 목숨이 거의 다하게 된 셈이다. 단양이란 고을이 처음에는 폐기된 고을이 아니었는데, 여러 번 탐관 오리의 손을 거치는 동안 백성의 고혈을 다 뺏아 먹었기 때문에 열 집에 아홉은 비게 되어 영원히 폐허가 되었으니, 이는 조정이 수령을 가려 보내지 않아서 공도가 없어지고, 사욕이 성했기 때문인 것이다. 비록 준량이 10년 동안 면세해서 소생시키고자 하였고, 조정에서도 허락한다 하더라도 어찌 10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법을 시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제 상소 내용을 보니, 10개 조항의 폐단을 진달하여 논한 것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성이 아닌 것이 없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하였다. 32)

5) 孝友 敦睦과 清貧

선생은 友愛에 敦篤하였으며, 모든 물건이 있으면 먼저 慈堂에게 올렸고, 姉妹와 弟姪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薄하게 가졌다. 鄉黨의 옛 벗들에 대해서도

32) [明宗實錄 022 12. 05. 07(己未) 丹陽郡守 黃俊良이 올린 民弊 10條의 上疏文.]

困窮한 이를 救恤하고, 급한 사람을 救濟하는데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였으며, 비록 가끔마다 이 때문에 남에게 嫌疑나 謹謗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았다.

殞命하던 날에는 이불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아 베를 빌어다가 數을 하였으며, 옷이 棺을 채우지 못하였다. 그런 뒤에야 사람들이 또 그 清貧함이 이와 같다는 것과 거짓으로 꾸며서 곁으로 世上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6) 山水愛와 雅趣

선생은 아름다운 山水를 매우 좋아하여 지나는 곳이나 臨하는 곳에 名山이나 韻水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불러 함께 찾기도 하고, 가끔 혼자 가기도하는데, 當到하면 徘徊 嘯詠하면서 밤이 새도록 돌아 갈 줄을 몰랐다. 丹陽의 島潭과 魚潭 같은 곳은 主人이 隱士 李之蕃인데, 함께 마음껏 즐겨 놀던 곳이다.

또한 奇好事를 매우 좋아하여 冰上에 雪馬³³⁾ 타기를 즐겼다. 언제인가 겨울에 강에 얼음이 두껍게 얼자, 中原으로부터 강을 따라 길을 취하여 썰매를 타고 올라와 李君을 만나 郡에 도달하여 말하기를 '快適함이 바랄 데 없다'고 하였다.

3. 錦溪 先生의 文集 및 詩文

1) 先生의 文集

선생의 文集은 内集과 外集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内集은 4卷인데 韓山 李山海 선생의 跋文이 있고, 外集은 9卷인데 平原 李光庭 선생의 識가 있어 編纂의 大綱을 알 수 있다. 編纂에 대해서는 鵝溪 李山海 선생의 跋文과 訥隱 李光庭

33) [退溪先生文集] 頭註에 '按雪馬 東俗所用 以雪中 田獵之具 履雪不滑 狀如古泥馬之制'라고 하였다. 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1 [退溪先生文集] 九 4009면.

선생의 後識에 그 經緯가 잘 나타나 있다.

鵝溪 선생 跋文에

'屬孫郡守汝誠 誠於好善 與鄉邑同志者 思所以酬其遺惠而不得 則收拾遺稿 因請于退溪先生 纂成編帙 繕寫而壽諸梓 以求永其傳'

이라 한 것을 보면 孫子 郡守 汝誠公이 鄉邑 同志들과 함께 遺稿를 收拾하여 退溪先生에게 纂成編帙을 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內集인 原集 4권으로, 퇴계 선생이 손수 校訂해서 丹陽郡에서 出版 한 것이다.

外集 8권은 寒岡 鄭述 선생이 安東府使로 있을 때, 校訂하고 淨書해서 출간하려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지내 왔는데, 戊午年 봄에 洞主 李萬華와 書院中の 선비들이 힘을 모으고, 선생의 宗孫 黃尙鑄 公이 主管하였으나, 黃公이 죽음으로 刊行을 보지 못했다.

英祖 30년 甲戌(1754) 겨울 士林에서 出版을 計劃하여 上舍 金翼景, 洞主 黃鼎大, 宗孫 黃潤德 등의 노력으로 訥隱 先生의 校訂을 받아, 이듬해인 乙亥年 (1755)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先生文集에 전하는 詩文은 대략 아래와 같다.

內集 卷一	詩	嚴川村	等 117首
卷二	詩	丁巳二月與金生箕	等 123首
卷三	詩	次夫餘回顧	等 37首 計 277首
卷四	雜著	丹陽鄉校重創記	等 17篇
	跋	鵝溪 李山海 先生	
外集 卷一	詩	遊頭流山紀行篇	等 110首
卷二	詩	靈芝精舍次	等 142首
卷三	詩	紫陽洞書堂	等 89首
卷四	詩	次八月三五夜見月吟	等 96首
卷五	詩	丁巳二月初七又踰竹嶺	等 136首
卷六	詩	林川試院次壁上韻	等 134首 計 707
卷七	疏	丹陽陳弊疏	等 2篇
	箋	禮曹請選東國通鑑綱目箋	等 3篇
	書	上退溪先生書	等 18篇

卷八	雜著	均田議	等 31篇
	祭文	祭周慎齋景游文	等 2篇
	墓誌	聾巖先生墓誌銘	等 1篇
	對策	問史才得失純駁	等 2篇
卷九	附錄	行狀 祭文 輓詞	等 9篇
	跋	訥隱 李光庭 선생	
計	詩	略 984首	
	散文	略 85篇	

訥隱 先生 撰한 先生文集 外集 跋文에 선생의 文章에 대한 評이 있으므로 아래에 보인다.

'선생의 文章이 모든 것을 드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를 상상할 수 있고,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선생의 평소에 이룬 事業 또한 이 文集을 度外視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선생의 內外文集은 다 咳唾³⁴⁾와 聲氣³⁵⁾의 남은 것이다. 참으로 잘되고 못된 것을 가릴 것이 없지만, 退溪가 가려 뽑은 것은 五分의 一에 不過한데, 取捨選擇을 한 것 같지는 않고, 丹陽郡의 形便에 따라, 우선 더욱 繫切한 것만 傳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外集은 寒岡 선생이 손수 校勘하고 淨書한 것이니, 後學들이 함부로 議論하고 말할 것이 못된다.'

선생의 文集 연구에 參考가 될 資料로는 松潤 黃應奎 선생이 [錦溪集]을 읽다가 뜻이 통하지 않는 13곳을 찾아 기록한 筆寫本 [本草攷異]가 있으며³⁶⁾, 錦溪 연구에 參考 資料로는 [錦溪先生辨誣錄]³⁷⁾이 있다.

[錦溪先生辨誣錄]은 眞城 李彙載의 序文과 上之三年壬子³⁷⁾七月既望 眞城 李彙潑의 後識 및 上之二年 乙丑³⁸⁾孟秋 宣城 金輝浚의 後識가 있으며, 漢裝 木版本 1冊인데, 複製本을 錦溪의 자손으로부터 最近 筆者가入手하였다.

34) 咳唾 : 言語와 詩文

35) 聲氣 : 文章의 聲韻과 氣勢

36) 姜成塏 [錦溪 黃俊良의 文學과 思想] 10面, 安東大學校 碩士論文, 1998.2.

37) 哲宗 3年壬子(1852)로 推定됨.

38) 高宗 2年 乙丑(1865)으로 推定됨.

4. 豊基地域의 退溪學者

필자의 寡聞인지 모르겠으나, 豊基 地域에는 安東이나 다른 地域과 같이 退溪의 學脈을 이은 弟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아는 대로 몇 사람에 대해 간단히 言及하는 것으로 塞責하려 한다.

1) 松潤 黃應奎 先生

선생의 字는 仲文이고 昌原人이다. 中宗 12년 (1518) 豊基에서 출생하였는데, 타고난 資質이 매우 特異하고 壯大하였으며³⁹⁾, 도량이 넓고 마음이 활 트였다⁴⁰⁾. 退溪先生의 門人으로, 梅巖 李叔樸선생과 함께 道谷에서 글을 읽었다. 司馬試에 합격하여 太學에 遊學하였는데, 企齋 申光漢⁴¹⁾ 선생이 禮讚하여 말하기를 ‘三代 아래 人物이 아니다’ 라 하였다. 퇴계 선생께서 別世한 뒤에 陶山書院을 拜謁하고 아래의 시를 지었다.

束修承指掌	예물을 올리고 ⁴²⁾ 가르침을 받았으나
喬木未遷鷺	교목에도 못 오르는 꾀꼬리 었다네
時雨川林化	단비가 내리니 모든 숲이 변화하고
和風百卉榮	봄바람 불어오니 온갖 풀이 무성하네
齊明如左右	제명 ⁴³⁾ 하신 그 모습은 좌우에 계시는 듯
秀鬚拜平生	평생도록 모시고 있는 듯 하다네
霽月濂溪後	光風 霽月 ⁴⁴⁾ 같은 주렴계 선생 이후에
何人是兩程	그 누가 두 程子처럼 될 수가 있으랴

〈暮春謁陶山祠〉⁴⁵⁾

39) 奇偉 : 매우 특이하고 雄壯함.

40) 翳落 : 도량이 넓고 마음이 활 트인 모양.

41) 申光漢 成宗 15(1484) – 明宗 10(1555) 字 漢之. 號 企齋

42) 束脩 : 束修. 肉脯 10조각을 포개어서 둑은 것. 사람을 訪問할 때나, 제자가 스승에게 드리는 예물로 썼음. 나이 십오세가 되어 입학함. 또는 처음으로 벼슬하여 나아갈 때 떠를 매고 몸 차림을 단정히 한다는 데서 이르는 말.

43) 齊明 : 단정하고 엄숙함. [中庸] ‘齊明盛服 非禮不動’

44) 黃庭堅은 周濂溪 선생을 光風 霽月 같다 하였다.

45) [松潤集] 卷一

선생은 官職에 뜻을 두지 않고, 學問에만 專念하다가 52세 때인 宣祖 2년 己巳(1569)에 文科에 及第하였다. 宣祖 12년(1570) 丹陽郡守에 임용되면서 宦路에 나섰으며, 丹陽의 七弊를 是正하는 上疏를 하여 賦役을 減免시켰다.

그 뒤 豊基郡守로서 紹修書院이 오래되어 폐폐한 것을 보고, 선생이 마음을 다하여 重修하고, 별도로 童蒙齋를 지어 학문을 勸誘하고 장려하여 각각 성취하게 하였다. 同敦寧을 지내고 물러나 詩文을 즐기면서 晚年을 보냈다.

宣祖 31년 畢하니 享年 81세였으며, 吏曹判書에 贈職되었다.

2) 裴漸

옛날 興州⁴⁶⁾에 살던 사람으로 이름을 純이라고도 하며, 대장쟁이를 업으로 하였다. 집이 紹修書院 부근⁴⁷⁾에 있었는데, 퇴계 선생께서 講義할 때마다 꼭 참석하여 뜰 아래서 절하고 끓어앉아 講義를 들었으며, 이것이 每日의 日常事が 되어 돌아가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얻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알아듣고 이해한 것이 상당하였다.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心喪의 복을 행하였으며, 國喪을 당해서는 衰服을 입고 3년 동안 소박한 생활을 하였다. 蒼石 李塉⁴⁸⁾ 선생이 그 고을을 다스릴 때 조정에 보고하여 旌閭하고 紿復⁴⁹⁾하도록 하였다. 그 旌閭碑는 지금도 中村 옛 터에 남아 있으며, 〔陶山及門諸賢錄〕 卷四 마지막에 裴漸의 기록이 있는데, 글자를 한 字씩 낮추어 놓았다. 이것은 아마 身分이 낮은 때문이다.

46) 順興의 옛 이름.

47) 郭진의 〔丹谷集〕 卷五 裴純傳에 의하면 그는 竹溪 上流에 있는 平章洞에 있었다 한다. 〔退溪學譯註叢書〕 第28冊 428면 金鍾錫 教授 譯

48) 蒼石 李塉 : 字 叔平 西厓 門人.

49) 紿復 : 賦役이나 租稅 등을 免除해 주는 것.

3) 息庵 黃遲 先生

선생의 字는 景明, 호는 息庵 또는 遊庵이고 昌原人으로, 直長 黃應奎 선생의 子이며, 中宗 39년(1544)에 출생하였다. 藥圃 鄭琢 선생의 門人인데, 明宗 19년(1564)에 成均館 儒生이 되었고, 宣祖 3년(1570) 式年文科 甲科에 及第하여 司諫 執義 都承旨 星州牧使 등을 거쳐 兵曹參知가 되어 王辰倭亂 때는 임금 을扈從하였다.

이어 募運使로서 軍糧 輸送에 공을 세우고, 戶曹 吏曹 禮曹 兵曹의 參議를 거쳐 大司成 副提學을 역임하였으며, 戶曹 禮曹의 參判을 거쳐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光海君이 卽位하자 領議政 柳永慶의 妻男으로서 이에 連坐되어 罷職 되었다.

고향에 돌아가 학문에 열중하였으며, 光海君 8년(1616)에 卒하였다. 吏曹判書에 追贈되었고, 豊基의 愚谷書院에 祭享하였으며, 謂號는 貞翼이다.

5. 맺는 말

이제까지 '退溪學의 地域的 展開'라는 대 主題 아래 豊基地域 退溪學脈의 일부를 잠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錦溪 黃俊良 先生의 生涯와 사상에 대하여 皮相의인 관찰을 하였을 뿐이고, 선생의 깊은 思想과 學問에 대하여는 연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구나 豊基 지역의 餘他 학자들에 대해서는 다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으며, 연구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시 느낀다.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 研究者가 신진 학자들 중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부끄러운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